

[별표2]

직무자격 가산점

자 격 의 종 류	배점
○ 소방기술사, 위험물기능장, 자동차정비기능장, 정보통신기술사 ○ 1급 ~ 4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 ○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·사업용조종사·항공정비사·항공공장정비사 ○ 응급구조사1급, 간호사, 화재조사관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안전교육사, 전문인명구조사, 건축사 ○ 「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른 초급·중급·고급·전략 현장지휘관	0.5
○ 소방설비기사(기계), 소방설비기사(전기), 자동차정비기사, 화재감식평가기사, 정보처리기사, 무선설비기사, 정보통신기사 ○ 5급 또는 6급 항해사·기관사 ○ 응급구조사 2급,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, 인명구조사 1급,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○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(무인 비행기, 무인 헬리콥터, 무인 멀티콥터, 무인 비행선)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○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, 구급전문교육사 1급, 선임 조종교육증명	0.3
○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),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)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무선설비산업기사, 무선설비기능사, 정보통신산업기사 ○ 소형선박조종사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 ○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, 인명구조사 2급, 제1종 대형운전면허 ○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(무인 비행기, 무인 헬리콥터, 무인 멀티콥터, 무인 비행선) 조종자(1종, 2종) ○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, 구급전문교육사 2급, 초급 조종교육증명	0.2